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2013360(본소), 2015나2013377(반소) 판결
[청구이의 · 매매대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2013360(본소), 2015나2013377(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4489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16. 6. 9.

판결 선고 2016. 7. 14.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54489(본소),
2014가합54632(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14년 제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반소원고)가 별지1 채무목록 기재 채무 중 70,000,000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함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반소원고)가 별지1 채무목록 기재 채무 중 70,000,000원을 각 채권자들에게 변제함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중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14년 제9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 법인도장, 법인카드를 양도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6.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운송면허, 등록차량(별지2 목록 기재 차량)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 운송면허 및 차량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7,300만 원¹⁾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3월 1일 이전까지 발생된 운송면허 등 법인에 속해있는 모든 부채는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단, 법인매매와 대표이사 승계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부채 및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피고는 매각차량의 벌과금 등 부채를 책임지고, 차량 양도시 차량가액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캐피탈 대금은 승계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인수하고, 인수가격은 1억 4,000만 원으로 한다(할부금은 원고 승계).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7,000만 원

5. 중도금 지불시 법인 양도서류 일체와 대표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법인도장, 법인카드 일체).

7. 2014. 3. 1.부터 발생하는 차량의 할부금 및 기타세액은 원고가 책임진다.

9.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3대를 쌍방합의하에 2014. 11. 30.까지 임대하며, 피고는 임대차량에 발생하는 할부금, 보험료 및 기타비용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매매대금의 잔금 7,000만 원은 2014.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상기 계약을 위반할 시 위반자는 계약금의 2배를 위반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직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원고는 D을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은 '법인매매와 대표이사 승계'를 마무리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3. 6. 피고에게 액면금 7,0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30., 발행일 2014. 3. 6.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면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14년 제95호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2조에 의하면, 2014. 3. 1. 이전까지 발생한 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014. 3. 1. 이전에 발생한 ① 기업은행 대출금 5,000만 원, ② 주식회사 블루에너지에 대한 유류대금 미지급금 16,269,600원, ③ 과태료 미납액 2,998,600원, ④ 부가가치세 미납액 17,661,150원 및 ⑤ 별지2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한 2014년 2월분 할부대금 미납액 24,886,454원 합계 111,815,804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은 위 금액 상당 가치의 하락이 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권을 상계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력은 부인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피고 부담으로 정한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만을 명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2조의 의미는, 피고가 2014. 3. 1.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해당 채권자들에게 여전히 부담한다는 것이지,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위 채무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는 피고의 해당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부담과는 별도로 2014. 3. 30.까지 선이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의 채무 불이행시 그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다는 등의 약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반대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2조는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채무부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2조의 의미를 우선 규명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 여부에 관한 청구원인을 살핀다.

2)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2조의 의미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이 사건 법인의 운송면허, 차량 등 유, 무형의 자산 및 이를 표상하는 경영권을 그 매매목적물로 하여 원고가 이를 양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게 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 무형의 자산과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안하여 그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한 자산과 부채가 확정적이지 않다면 그 매매대금 역시 변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쌍방이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밝혀질 우려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가 2014. 3. 1. 이전의 부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2014. 3. 1. 이전의 이 사건 법인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면서도 그 채무의 명의변경 또는 채무인수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바, 위 채무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이를 이 사건 법인 또는 원고(이 사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사실상 이 사건 법인의 자산이 변경되므로 그 채무액만큼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초과부담하게 되는 결과, 결국 원고가 당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가 부담하더라도 그 내부관계에서는 피고를 그 채무의 최종적 부담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으로 채무 명의자인 이 사건 법인의 채무에 관한 이행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④ 나아가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또는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2014. 3. 1.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인 이 사건 법인 또는 사실상의

경영자인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라야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또는 이 사건 법인이 스스로 이를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무액 상당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곧바로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과 상계할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 여부 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 16, 21호증, 을 제4, 8, 9, 13, 14, 15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당심의 안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안양세무서에 대한 과제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14. 3. 30.로 정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후인 2014. 3. 18. 피고에게 '2014. 3. 1. 이전에 발생한 채무로, 기업은행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 7,242,065원의 카드연체대금, 16,269,600원의 유류대금 및 1억 4,000만 원의 신문광고료 채무 등 합계 213,511,665원의 채무를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채무와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채무를 상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다음날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원고는 2014. 4. 24.에도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③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법인 부담의 2014. 3. 1. 이전 발행 채무 중, i) 신문광고료 채무는 피고의 개인채무로서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ii)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그 상환기일인 2014. 4. 25.까지는 이자의 연체가 없었으나 위 상환기일에 대출금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금이 2014. 7. 30. 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2015. 1. 8. 현재 그 구상금채권 잔액이 45,685,282원이며, iii) 카드대금은 피고가 2014. 11. 13. 모두 변제하였고, iv) 2013년 12월까지 주식회사 블루에너지에 대한 유류대금 미지급액 16,269,000원이 지금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으며, v)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2건의 과징금 400,000원이 체납 중이고, vi) 미납된 부가가치세액이

11,611,150원2)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813,220원3) +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240,700원 + 2013년 7월분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50,370원, 201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7,506,860원)이며, vi) 이 사건 법인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한 2014년 2월분 할부금 미지급액이 현재 24,886,4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2423 판결 참조).

다)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법인의 운송면허 등 유, 무형의 자산을 인수하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위 자산과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감안하여 그 실질적 가치에 근접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자 하였을 것인 점,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파악한 채무액이 자신의 잔금지급채무액을 월등히 초과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자신의 잔금지급채무 이행 후에도 피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던 점(비록 그 당시 피고가 부담할 이 사건 법인 채무로 인식했던 신문광고료 채무가 피고의 개인채무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인식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법인 채무로서 자신이 부담할 채무의 이행 방안이나 원고의 내용증명에 아무런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 위 각 채무 중 상당액의 채무가 현재까지도 제대로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이 피고의 위 각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각 채무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자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었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 중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상응하는 원고의 잔금지급채무 역시 그 이행이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현실적으로는 동시이행관계와 유사한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 중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 부담하기로 한 2014. 3. 1. 이전 발생 채무의 범위와 같을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채무액은 ①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 잔액 45,685,282원, ② 주식회사 블루에너지에 대한 유류대금 미지급액 16,269,000원⁴⁾, ③ 이 사건 법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2건의 과징금 400,000원⁵⁾

④ 미납된 부가가치세액 1,291,070원⁶⁾ 7)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240,700원 + 2013년 7월분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50,370원), ④ 별지2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한 2014년 2월분 할부금 미지급액 24,886,454원⁸⁾ 합계 88,531,806원(이상의 채무를 '별지1'로 정리하고, 이하 '별지1 채무목록 기재 채무'라 한다)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 70,000,000원을 초과함이 분명하다.

마) 한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피고 부담으로 정한 이 사건 법인의 채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잔금지급의무만을 명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비록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피고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긴 하나,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 전액에 대한 이행을 피고의 위 채무 이행까지 거절할 수 있고(현실적으로 동시이행관계와 유사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 지급을 위한 담보로 작성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별지1 채무목록 기재 채무 중 70,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함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잔금지급채무를 피고에게 이행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일부 배제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이후 현재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위약금을 계약금의 2배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조에서 정한 피고에 대한 차량 3대의 임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금의 2배인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위 위약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 및 중도금 7,300만 원의 반환채무와 상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만 지급하면 되고, 원고는 원상회복으로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약속어음금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2014. 3. 1.부터 발생한 차량의 할부금을 연체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7조를 위반하였고, 위 주위적 주장과 같이 제9조에 따른 임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 4,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1) 먼저, 원고가 잔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현재까지 현실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고가 위 잔금지급채무를 정당하게 이행거절하고 있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14. 3. 3. 납부하여야 할 차량할부금의 일부가 연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할부금은 2014년 2월분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오히려 위 할부금은 피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양수하였는데, 양수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법인의 채무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납부하기로 한 차량의 할부금이 연체되어 일부 차량이 캐피탈로부터 취거되기도 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버스 3대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기도 하는(피고는 이를 범죄사실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251 등 판결 참조) 등의 일들이 발생하여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9조에서 정한 차량 3대의 임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에게 해제권이 발생하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김민기

판사이한일

별지

1) 이 사건 법인의 운송면허 양도, 양수절차가 이행되려면 양수인이 총 매매대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0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한 7,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2) 원고는 미납된 부가가치세액이 18,611,15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을 8,813,230원으로 계산한 것에 터 잡은 것인데, 위 기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이 2,813,230원임은 당심의 안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5. 7. 16. 납부되었는데, 그 납부자는 알 수 없다.

4) 피고는 위 회사와 사이에 15,000,000원을 미수금으로 전제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금원에 대해서만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위 미지급액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원고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들어 이 부분 채무액이 2,998,6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심의 안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2013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813,220원이 2015. 7. 16.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납부자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는 하나,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원고가 납부하였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7) 원고는 201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7,506,860원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3. 1.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위 201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2014. 1. 1.부터 2013. 3. 31.까지의 예정신고기간 내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부가가치세액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8)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부분 할부금은 그 청구일이 2014. 3. 1. 이후이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2조, 제3조, 제7조에 의하여 위 할부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차량들에 대한 할부금은 청구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에 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